

□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20. 2. 17(월) 15:00, 협회 회의실
- 참석자 : 외부 컨설턴트 및 석유화학 기후변화대응반원 등
- 프로그램

시간	내용	비고
15:00~15:10	개회 및 안내(비상대피, 공정거래)	협회
15:10~16:20	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내용 소개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	
16:20~17:30	3기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응 연구용역 추진 (안) 논의	컨설팅사
17:30	정리 및 폐회	

1.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('19.12.30)

□ 배출권 할당단위 변경 건

- 환경부는 향후 3차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시 할당·관리 단위변경(시설 →사업장) 추진
 - (주요 내용) 감축방법에 재량 부여를 목적으로 할당·할당취소 배출권 산정단위를 ‘시설’ 에서 ‘사업장’ 으로 변경하여 업체가 다양한 감축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
 - (문제점) 증설 할당단위 변경 시 증설 시설의 용량과 배출량 증가분이 사업장 전체 용량과 배출량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야 추가 할당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
 - 사업장 규모와 배출량이 큰 석유화학업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·소규모 증설에 대한 배출권 추가할당 어려울 수 있음
- * (환경부)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,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: 증설에 따른 설계 용량10% 및 배출량5% 증가 동시 충족 시 추가할당

- 또한 기존 NCC 또는 GTG 배출시설이 추가될 경우 신설설비로 추가할당이 가능하나 사업장 기준을 적용 시 ①설계용량 10%의 기준점이 모호하고 ②배출량 5% 증가 충족 또한 어려움
 - 활동자료(에틸렌 생산량, PX 생산량, SM생산량, 발전량) 중 설계용량 10% 증가 입증의 기준 설정 모호
- * 사례) A社 경우 '20년 증설로 인한 예상배출량 60만톤 있으나 기준 변경으로 설계 용량 10%조건 미충족 시 기존 대비 약240억원 비용 증가(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)

□ 업계 의견

- ① 신증설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은 예외사항으로서 별도 평가
- ② 현행 증설에 따른 추가할당 기준(설계용량10% 및 배출량5%) 완화(예, 설계용량5% 및 배출량 3%)
- ③ 제품 생산량 증가에 따른 추가할당
- ④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판단기준 측면에서 틀이 바뀐 것으로서, 향후 외자 유치와 투자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고 신규 사업 승인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(주주 반대 등)